

의안번호	2205240
의 퇴 인	전재수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2.
추 계 번호	24E4839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근로자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근로소득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2025년 2,123억원, 2029년 3,217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조 4,958억원(연평균 2,99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근로자에 대한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(안 제12조제3호러목)	-2,123	-3,197	-3,207	-3,214	-3,217	-14,958	-2,99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 (비과세소득)	○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 한도 확대 - (현행) 월 20만원 - (개정안) 월 30만원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2조(비과세소득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4년 말에 통과되어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경우, 4월 식사대 지급분(5월 원천징수)부터 인상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
 - 2025년 세수효과는 연간 금액의 8/12(5~12월)이 발생한다고 가정
-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근로자 1인당 추가 비과세 금액은 연간 120만원(= 10만원 × 12개월)으로 가정하며, 근로소득자 중 46.5%가 식사대를 지원받는다고 가정
 - 식사대를 지급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현행 한도인 월 20만원(연간 240만원)을 지급하고 있으며, 개정안에 따라 한도가 인상될 경우 식사대를 월 30만원(연간 360만원)으로 일괄 인상한다고 가정
 -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 확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계하며, 근로소득자 중 식사대를 지원받는 비율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참고하여 46.5%(2022년 기준)으로 가정
 -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을 바탕으로 총급여 구간별 실효세율(결정세액/총급여)을 적용하여 비과세 금액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액 추계
- 「2025년 NABO 경제전망」의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¹⁾에 따라 향후 세수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
 - 총급여 구간별 실효세율이나 근로소득자 중 식사대를 지원받는 비율 등은 향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

1) NABO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(%) :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취업자수 증가율	1.2	0.7	0.4	0.4	0.3	0.2	0.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~2028」, 2024.10.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추계방법

□ (2022년 귀속 세부담 감소효과) 2022년 귀속소득 기준, 식사대 비과세 한도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 효과는 다음과 같음

- 1인당 추가 비과세 금액은 연간 120만원
 - － 360만원(30만원×12개월) － 240만원(20만원×12개월)
- 총급여 구간별 실효세율 및 식사대를 지원받는 근로소득자의 비율(46.5%)을 적용하여 세수감소액을 계산

[표 2]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세수감소액 추계: 2022년 귀속기준

총급여 규모별	과세소득 신고 인원 수(명)	1인당 추가 비과세 금액(만원)	실효세율	식사대 지원 비율	세수 감소액 (백만원)
1,5천만원 이하	177,982	120	0.1%	46.5%	78
2천만원 이하	824,105		0.4%		1,683
3천만원 이하	2,894,922		0.8%		12,827
4천만원 이하	2,314,031		1.7%		22,245
4,5천만원 이하	983,247		2.6%		14,353
5천만원 이하	859,585		3.2%		15,307
6천만원 이하	1,397,685		4.0%		31,286
8천만원 이하	1,806,448		5.5%		55,672
1억원 이하	1,058,411		8.1%		48,027
2억원 이하	1,146,940		13.5%		86,165
3억원 이하	107,365		22.4%		13,450
5억원 이하	41,555		27.4%		6,357
10억원 이하	15,243		32.1%		2,730
10억원 초과	4,823		39.2%		1,056
합 계	13,632,342	－	－	－	311,236

주: 결정세액이 존재하는 자를 대상으로 계산

자료: 국세청의 「국세통계연보」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세수효과) 연도별 세수효과는 「2025년 NABO 경제전망」의 취업자 수 증가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
- 단, 2025년은 연간 세수효과의 8/12(5~12월 원천징수분)만 반영
 - －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이 2025년 4월 급여분부터 적용될 경우, 5~12월 원천징수에 영향을 줌

나. 추계결과

- 근로소득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2025년 2,123억원, 2029년 3,217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조 4,958억원(연평균 2,99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근로자에 대한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(안 제12조제3호러목)	-2,123	-3,197	-3,207	-3,214	-3,217	-14,958	-2,992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